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계정책담당관 및 식품외식산업과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지능화·대형화되는 농식품 부정유통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을 신설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빅데이터전략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5명(6급 3명, 8급 2명)의 직급을 상향(5급 3명, 7급 2명) 조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원 30명(6급 5명, 7급 10명, 8급 6명, 9급 9명)의 직급을 상향(5급 5명, 6급 10명, 7급 10명, 8급 5명)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1명(5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1명)으로 환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2명(5급 2명)을 종전의 직급(6급 2명)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3명(4급 1명, 5급 2명) 중 2명(5급 2명)은 존속기한을 2023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정원 1명(4급 1명)은 종전의 직

급(4급 또는 5급 1명)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9명(5급 3명, 6급 4명, 7급 2명) 중 7명(5급 3명, 6급 4명)은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16일까지에서 2025년 6월 16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정원 2명(7급 2명)은 종전의 직급(9급 2명)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원 중 41명(5급 9명, 6급 24명, 7급 5명, 연구관 3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16일까지에서 2025년 6월 16일까지로 연장하고 정원 16명(5급 13명, 연구관 3명)은 종전의 직급(6급 13, 연구사 3명)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원 39명(5급 11명, 6급 17명, 7급 6명, 8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16일까지에서 2025년 6월 16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를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으로,”로 한다.

제2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기지원에는 유통관리과, 품질관리과, 경영직불팀 및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을 둔다.

제22조제3항 중 “유통관리과장 및 경영직불팀장”을 “유통관리과장, 경영직불팀장 및 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표시관리”를 “표시관리(경기지원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운영”을 “운영(경기지원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사항”을 “사항(경기지원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열람”을 “열람(경기지원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관리
2.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단속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3. 국내산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조사 및 열람

제33조제2항 중 “정보통계정책담당관, 식품외식산업과장, 첨단기자재종
자과장”을 “첨단기자재종자과장”으로 한다.

별표 7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9”를 “28”로, 서기관·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2”로,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수의주사보·시설주사보·통계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방재
안전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35”를 “37”
로,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30”을 “28”로 하고, “사무운영주사보 2”를
삭제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9”를 “21”로 한다.

별표 9 중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수의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
무관·통계사무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21”을 “20”으로 하고,
농업사무관 “10”을 “5”로 하며, 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 “15”를 “13”
으로 하고, 수의사무관 “19”를 “14”로 하며, 농업주사 “94”를 “101”로 하
고, 행정주사·공업주사·수의주사·농업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
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40”을 “42”로 하며, 수의주사 “104”를 “10
8”로 하고, 수의연구관 “34”를 “33”으로 하며, 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
관 “4”를 “2”로 하고, 수의연구사 “88”을 “91”로 한다.

별표 10 중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31”을 “33”으로, 사무운영서기
보 “20”을 “18”로 한다.

별표 11 중 농업사무관 “7”을 “12”로, 행정주사·농업주사 또는 통계주

사 “122”를 “132”로, 농업주사 “185”를 “180”으로,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178”을 “172”로, 농업서기 “194”를 “199”로,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31”을 “29”로, 농업서기보 “32”를 “27”로, 사무운영서기보 “18”을 “16”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빅데이터전략팀장은 2023년 5월 31일”을 “빅데이터전략팀은 2025년 5월 31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6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023년 6월 16일”을 “2025년 6월 16일”로, “2023년 6월 17일”을 “2025년 6월 17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단서 관련한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

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
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의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은 2026년 5월31일
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의 수
도권농식품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경기지원의 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립농
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의 유통관리과장이 분장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농림축
산식품부령 제47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을 제외한 별표 7의 정원 2명(행
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
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2명)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2명(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
시설주사·통계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방재안전주사·방송통신
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기록연구사 또

는 농촌지도사 2명)으로 본다.

②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6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을 제외한 별표 7의 정원 7명(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3명 및 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시설주사·통계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방재안전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4명)은 2025년 6월 16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6월 17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7명(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시설주사·통계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방재안전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3명 및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수의주사보·시설주사보·통계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4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환경사무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기록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3명 및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수의주사보·시설주사보·통계주사

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2명)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5명(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시설주사·통계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방재안전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3명 및 ☑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2명)으로 본다.

④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6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을 제외하고 직렬이 변경되는 정원을 포함한 별표 9의 정원 41명(농업사무관 2명, 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 1명,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수의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1명,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수의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1명, 수의사무관 4명, 농업주사 12명, 수의주사 7명, 행정주사 3명, 전산주사 2명, 농업주사보 5명, 수의연구관 1명 및 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2명)은 2025년 6월 16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6월 17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9의 농업주사 2명, 농업주사 1명, 농업주사 1명, 행정주사 1명, 수의주사 4명, 농업주사보 12명, 수의주사보 7명, 행정주사보 3명, 전산주사보 2명, 농업서기 5명, 수의연구사 1명 및 수의연구사 2명으로 본다.

⑤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1의 정원 30명(농업

사무관 5명, 행정주사·농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10명,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0명 및 농업서기 5명)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30명(농업주사 5명,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0명,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6명,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4명 및 농업서기보 5명)으로 본다.

제5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하향 조정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정원 16명(농업사무관 5명, 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 2명,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수의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1, 수의사무관 5명, 수의연구관 1명 및 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② 농관원 지원에 유통관리과, 품질관리과 및 경영직불팀을 둔다. <단서 신설>

③ 유통관리과장 및 경영직불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품질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유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관리

2.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단속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3. ~ 5. (생략)

6. 국내산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7. ~ 11. (생략)

12.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② -----

--. 다만 경기지원에는 유통관리과, 품질관리과, 경영직불팀 및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을 둔다.

③ 유통관리과장, 경영직불팀장 및 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

--.

④ -----
-----.

1. -----
-- 표시관리(경기지원은 제외한다)

2. -----
----- 운영(경기지원은 제외한다)

3. ~ 5. (현행과 같음)

6. -----
-- 사항(경기지원은 제외한다)

7. ~ 11. (현행과 같음)

12. -----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한 수거·조사 및 열람

13. (생 략)

⑤·⑥ (생 략)

<신 설>

제3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
라 정보통계정책담당관, 식품외
식산업과장, 첨단기자재종자과
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
과장·식물방제과장·해외전염
병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열람
(경기지원은 제외한다)

13.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
산지 표시관리

2.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단
속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운
영

3. 국내산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한 수거·조사 및 열람

제3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첨단기자재종자과장-----

품질검사과장·시험연구소장 및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전문교 육과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 할 수 있다.	-----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3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3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빅 데이터전략팀장은 2023년 5월 3 1일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 ----- 빅 데이터전략팀은 2025년 5월 31 일-----.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9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9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2호 농 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삭 제>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별표 7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환경사무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기록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명)은 2023년 6월 6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6월 7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시설주사·통계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방재안전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으로 본다.

②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2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별표 7의 정원 2

명(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
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
관·방재안전사무관·방송통신
사무관·사서사무관·환경사무
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
기록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2
명)은 2023년 5월 27일까지 존
속하며, 2023년 5월 28일 이후
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
표 7의 행정주사·농업주사·
수의주사·시설주사·통계주사
·전산주사·공업주사·방재안
전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
사·환경주사·농업연구사·수
의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농
촌지도사 2명으로 본다.

③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43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정
원으로서, 별표 7의 정원 3명(서
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및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
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
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2명)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및 행정주사 · 농업주사 · 수의주사 · 시설주사 · 통계주사 · 전산주사 · 공업주사 · 방재안전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환경주사 · 농업연구사 · 수의연구사 · 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명으로 본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6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생략)

②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47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정원으로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6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을 제외한 별표 7의 정원 9
명(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
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
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
관 또는 환경사무관 3명, 행정
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시
설주사·통계주사·전산주사·
공업주사·방재안전주사·방송
통신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
·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기
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4명
및 사무운영주사보 2명)은 2023
년 6월 16일까지 존속하며, 202
3년 6월 17일 이후에는 그에 해
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행정주
사·농업주사·수의주사·시설
주사·통계주사·전산주사·공
업주사·방재안전주사·방송통
신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
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기록
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3명,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수의
주사보·시설주사보·통계주사
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

방재안전주사보 · 방송통신주사
보 · 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
보 4명 및 사무운영서기보 2명
으로 본다.

③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47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 부칙 제3조제5항에 따른 정
원으로서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을 제외하고 직렬이 변경되
는 정원을 포함한 별표 9의 정
원 57명(농업사무관 7명, 농업
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 3명,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수의
사무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
관 · 통계사무관 · 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1명, 행정사무
관 · 공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
사무관 · 수의연구관 또는 농업
연구관 3명, 수의사무관 8명, 농
업주사 12명, 수의주사 7명, 행
정주사 3명, 전산주사 2명, 농업
주사보 5명, 수의연구관 2명 및
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4

<삭 제>

④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45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을 제외한 별표 11의 정원 39명(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11명, 행정주사·농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16명, 전산주사 1명, 농업주사보 5명, 운전주사보 1명, 농업서기 4명 및 운전서기 1명)은 2023년 6월 16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6월 17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행정주사·농업주사

[illegible]

또는 통계주사 11명, 행정주사 보·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 보 16명, 전산주사보 1명, 농업 서기 5명, 운전서기보 1명, 농업 서기보 4명 및 운전서기보 1명 으로 본다.	----- ----- ----- ----- ----- -----.
---	---

신 · 구 정원 대비표

[별표 7]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29</u>	<u>28</u>	-1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1</u>	<u>2</u>	+1
·	·	·	
·	·	·	
행정주사보 · 농업주사보 · 수의주사보 · 시설주사보 · 통계주사보 · 전산주사보 · 공업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u>35</u>	<u>37</u>	+2
·	·	·	
·	·	·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u>30</u>	<u>28</u>	-2
·	·	·	
·	·	·	

<u>사무운영주사보</u>	<u>2</u>	<u><삭 제></u>	-2
사무운영서기보	<u>19</u>	<u>21</u>	+2
.	.	.	
.	.	.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수의 사무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 관 · 통계사무관 · 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 · <u>21</u>	· · <u>20</u>	-1
· · 농업사무관	· · <u>10</u>	· · <u>5</u>	-5
· 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	· <u>15</u>	· <u>13</u>	-2
· 수의사무관	· <u>19</u>	· <u>14</u>	-5
· · 농업주사	· · <u>94</u>	· · <u>101</u>	+7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수의주사 · 농업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 사 · 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40	42	+2
수의주사	<u>104</u>	<u>108</u>	+4
·	·	·	
·	·	·	
수의연구관	<u>34</u>	<u>33</u>	-1
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u>4</u>	<u>2</u>	-2
·	·	·	
·	·	·	
수의연구사	<u>88</u>	<u>91</u>	+3
·	·	·	
·	·	·	

[별표 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u>31</u>	<u>33</u>	+2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20</u>	<u>18</u>	-2

[별표 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농업사무관	<u>7</u>	<u>12</u>	+5
•	•	•	
•	•	•	
행정주사·농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u>122</u>	<u>132</u>	+10
농업주사	<u>185</u>	<u>180</u>	-5
•	•	•	
•	•	•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u>178</u>	<u>172</u>	-6
•	•	•	
•	•	•	
농업서기	<u>194</u>	<u>199</u>	+5
•	•	•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u>31</u>	<u>29</u>	-2
농업서기보	<u>32</u>	<u>27</u>	-5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8</u>	<u>16</u>	-2
---------	-----------	-----------	----